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8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주)에이치 시티 (대표: 허봉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2024.6.28.	제2024-5호	품목	세부품목
				① 재사용전지 모듈 ② 재사용전지 시스템(정 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① 재사용전지모듈 ②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 시행규칙 별표 7의 2 비고 가목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되어 재사용전지시스템에 사 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 전지(재사용전지시스 템 포함)를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 는 재사용전지모듈은 재사용전지시 스템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